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578 호

의 안 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 상 기 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연월일 2016. 7. 25.

주 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7월 2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2016.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제도현황	2
III .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 없는 완납증명	4
2.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완납증명	8
3. 납부증명서 발급 불편 사항	10
IV . 조치사항	12

I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35번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66번 : ‘파산자 등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가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을 증명하도록 의무화

※ '15.12.19. 공공기관 대금 수령 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토록 국민연금법, 동법 시행령 개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은 일부 기업, 소상공인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 경제활성화 국정기조에 반하는 측면

○ 법원 결정으로 회생인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완납증명을 요구하여 회생의지 좌절

○ 수의계약의 경우 납세증명을 면제하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소액수의 계약인 경우에도 완납증명을 요구하여 소상공인 애로 가중

○ 완납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어 대금 청구때마다 매번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보험료 이체 반영이 지체되어 연체로 표시

□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의무화에 따른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등 기업의 부담경감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5월), 실태조사(5-6월), 관계기관 협의(7월)

II

제도 현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제도

- (제도 의의) 국가 · 지자체 및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토록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간접적 이행 강제수단으로 도입
- (대상 계약)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제조, 구매 등의 대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
- (증명 예외) ①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②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 납부증명 예외 요청시 ③ 계약 대금으로 체납 보험료 납부 시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시 국세 납세증명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비교>

구분	납세증명	납부증명
근거	국세징수법 (1977년 시행)	국민연금법 (2016년 시행)
증명무	①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 ②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③ 내국인이 외국 거주목적 여권을 신청할 경우	①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 ② 규정 없음 ③ 규정 없음
증명예외	①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금의 경우 ② 국가, 지자체가 대금을 받는 경우 ③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대금을 받는 경우 ④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 납부증명 예외 요청시 ⑤ 계약대금으로 체납 세액 납부 시	① 규정 없음 ② 규정 없음 ③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대금을 받는 경우 ④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 납부증명 예외 요청시 ⑤ 계약대금으로 체납 보험료 납부 시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4
- (관련 절차)



〈참 고〉 국민연금 관련 통계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6. 4월말 기준, 단위: 천명, 천개 사업장)

구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타
		사업장	가입자	소계	농어촌	도시	
2016.04	21,556	1,579	12,905	8,150	1,911	6,239	501
2015.12	21,568	1,537	12,806	8,303	1,950	6,353	460
2014.12	21,125	1,389	12,310	8,445	1,972	6,472	371
2013.12	20,745	1,291	11,936	8,514	1,962	6,552	295
2012.12	20,329	1,196	11,464	8,568	1,956	6,612	296
2011.12	19,886	1,104	10,977	8,675	1,986	6,689	234

• 국민연금 연도별 보험료 징수실적

(2016. 3월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계	326,472	310,223	95.0	352,351	335,487	95.2	373,382	357,456	95.7	96,072	92,141	95.9
지역	49,978	35,666	71.4	51,979	37,312	71.8	53,629	39,301	73.3	13,721	10,215	74.5
직장	276,494	274,557	99.3	300,373	298,174	99.3	319,753	318,155	99.5	82,351	81,926	99.5

1. 법원 회생 인가¹⁾를 받은 경우도 예외 없는 완납증명

문 제 점

- 법원 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야만 하는 회생 기업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완납증명 필요
- 회생기업은 법원 결정에 따른 회생계획대로만 회생채권을 변제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완납이 법률상 불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법은 회생기업에 대한 납부증명 예외를 두지 않아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액을 우선하여 전액 변제해야함
- ※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간 상충으로 인해 회생기업은 원천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오히려 연금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연금재정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

1) 기업회생은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갚을 가망이 있다고 판단된 때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를 전제로 법원 인가로 진행

<민원 사례>

- ▶ 파형강판을 제조·판매하는 P기업 전무이사입니다. 당사 제품은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관급 현장에 다수 납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4년 5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년 2월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인기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체납 중이던 국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조세채권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15년 10%, 16년 20%, 17년 70%) 하도록 징수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조달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대금을 수령해 왔으나, 최근 부산시 발주 진입도로 건설공사 납품 건(5억8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발급을 요청 하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미납한 금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완납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생계획 이행을 통하여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당사와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2. 국민신문고 민원)

- ▶ 관공서 대금수령시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박한 회생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생 기업은 세금 체납분도 징수유예가 되어 국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되는데 반해,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체납분은 회생기업도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완납증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눈물나고 피나는 노력으로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처절한 상황을 무시하고 관련 문제 검토가 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 시행에 항의 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2015. 4. 국민신문고 민원)

- ▶ 법인 회생 중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기관 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체납분에 대해서 전부 완납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6. 5. 국민신문고 민원)

- 또한 공공기관은 회생기업의 완납증명 없이는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결국 국고에 손해 발생

※ 계약 대금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한 경과 후에는 지연 이자 부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선방안

- 회생 인가를 받은 채납보험료는 증명대상 채납액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개정

현 행	개선안(예시)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채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채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u>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채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채납액은 증명해야 할 대상 채납액에서 제외한다.</u>

- 회생인가를 받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내역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서식 개정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개선안(예시)																													
* 적색 표시된 내용을 서식에 추가																													
발급번호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용 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유예종류</th> <th>유예기간</th> <th>납부기한</th> <th>연금보험료</th> <th>연체금</th> <th>체납처분비</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유예종류	유예기간	납부기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유예종류	유예기간	납부기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 법인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내의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를 완납 시 발급됩니다. ※ 이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수익계약에 대해서도 완납증명

문 제 점

- 공공기관과 계약 시 완납증명 대상이 소액(국가계약법 상 2,000만원 미만), 단순지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
- 특히 수익계약의 경우 납세증명을 면제하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미납이 있을 경우 대금 지급을 금지하여 소상공인의 애로 발생
- ※ 국세징수법은 수익계약의 경우 납세증명서가 없어도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민원 사례>

▶ 먹고살기 빠듯한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수리·보수로 먹고사는 1인업체 대표입니다. 이번에 구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담당 주사님을 만났는데 계약 요건 중에 갑자기 국민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이 넉넉지 못해 건강보험료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처지라 개인 국민연금이 600만원 이상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공공기관과 하는 계약대금이 평균 500~600만원 내외의 소액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완납증명서가 있어야만 관공서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소규모 자영업자인 저같은 상황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16. 4.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공단 내부지침으로 일부 일상 경비 등 단순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실무상 계약과 단순지출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은 일상·반복적 지출, 단순 지출 등에도 완납증명을 요구
- 또한 소액 계약은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아 체납보험료 징수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도 역행

개선방안

- 소액, 일상·반복적 경비 등을 제외하도록 계약범위를 명확히 하여 완납증명 부담을 완화하거나,
- 수의계약 대금 수령의 경우 국세징수법처럼 납부증명 제외

<예시1>

현 행	개선안(예시)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단서신설)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u>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일상경비에 준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계약은 제외한다.</u>

<예시2>

현 행	개선안(예시)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 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3 생략 (신설)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 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3 생략 <u>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u>

3. 납부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

문 제 점

-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어 대금청구 할 때 마다 매번 납부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 차기 도래하는 보험료납부일(매월 10일)까지 보험료 체납 유무는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
- ※ 국세징수법 상 납세증명서에는 증명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 내에 대금청구를 여러 건 하는 경우에도 1회 증명서 발급으로 청구 가능

<민원 사례>

▶ (주) ○○ 계약담당자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에 입찰하여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완납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완납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새로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4월6일 증명서에 체납 사실이 없는데 4월 7일, 4월 8일자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마다 계약체결일, 대금지급일 등 제각각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해 날짜의 지급증명서를 요청하여 매우 불편하니 제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의 발급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개선을 희망합니다.
(2016. 4. 국민신문고 민원)

- 연금보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 한 경우, 전산 반영 문제로 인해 이체일로부터 2~3일간 납부증명서 발급이 불가
 - 보험료 납부일인 10일에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체납 보험료가 없음에도 시스템상 최소 2일간 연체 내역이 있는 것으로 표시
- ※ 은행에서 이체 출금 된 후 금융결제원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전송하는 기간이 약 2일 소요

<민원 사례>

- ▶ 거래처(국립대학교)에서 5월 11일에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2016년 4월분이 체납이어서 발급 불가로 확인되었음.

평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해놓아 연체가 있을리 없어 건강보험공단 측에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나 10일에 완납이 되어도 시스템상 2일 후에 반영되어 그렇다며, 현재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성실하게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문제로 체납으로 표시되어 적기에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2016. 5. 국민신문고 민원)

개선방안

-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 명시 또는 안내문구 표시
 - 발급일로부터 차기 도래하는 보험료 납부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도록 납부증명서 서식 개정

발급번호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사 업 장 명	
(중 략)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차기 도래하는 보험료 납부마감일 (매월 10일) 까지 유효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계좌이체 납부 시 완납증명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발급방법 다양화
 - ※ 중장기적으로 이체결과 즉시 반영되어 실시간으로 납부증명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치기한 : 2017. 7. 31.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	소관기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법원 결정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체납 보험료는 완납 증명 대상 체납액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회생인가를 받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내역을 제외 하도록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서식 개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규	국민건강 보험공단
	○ 소액·일상경비는 납부증명 대상 계약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 명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 연금보험료 이체납부시 납부증명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발급방법 개선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 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 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 증명서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 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채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채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